

성안동 청년희망주택 2차 추가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 2. 29.)

건설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393-2번지

- 울산광역시에서는 유선전화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라며,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3)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본 모집공고는 최초 모집공고(2023. 12. 28.) 및 추가입주자 모집공고(2024. 2. 8.) 접수결과 미달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2차 추가입주자 모집 공고로 **공급물량은 21A 1세대**입니다.
- **2019. 9. 27.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안동 청년희망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 2. 29.) 현재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 2. 29.)은 청약자격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성안동 청년희망주택은 청약은 현장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 및 입주 등 공급일정은 입주자격 조회기간 및 준공일정 연기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 성안동 청년희망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 동일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예비입주자 선정은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주택에 대한 사전 내부관람은 불가합니다.

■ 추가입주자 모집 공고 주요 내용

구분	최초 공고 (2023. 12. 28.)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2024. 2. 8.)	2차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2024. 2. 29.)
공급유형	우선공급 100%	일반공급 100%	일반공급 100%
공급주택형	19A/B/C 및 21A	21A	21A
공급세대수	36세대	1세대	1세대
공급대상	청년 및 청년 주거약자	청년 주거약자	청년

■ 입주자격 검증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해당 세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오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 12. 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해당 세대)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1. 공급일정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모집일정

대 상	일 정	방 법	장 소
일반공급	2024. 3. 18.(월) (10:00 ~ 16:00)	방문접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층 주택사업팀

■ 신청장소

구 분	세 부 내 용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울산도시공사
교통편	134, 205, 225, 235, 405, 453, 504, 527, 537, 705, 715, 718, 743, 744, 857번 버스 승차 → 울산박물관, 울산대공원동문앞 정류장 하차



■ 입주예정 : 2024년 6월(예정)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공사 준공일정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상세 안내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지정된 장소 및 시간에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가 불가하며, 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의 누락·오기재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전 반드시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 공급대상

주택형	공급대상	건설호수	모집할 입주자 수	세대 당 계약면적(m ²)				건물구조 · 난방방식	비고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합계		
21A (주거약자용)	청년	3	1	21.3100	24.7224	2.2000	48.2351	철근 콘크리트 구조 · 개별난방	24년 6월 입주예정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임대조건

주택형	공급대상		표준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원)	전환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계(100%)	계약금(20%)	잔금(80%)				
21A (주거약자용)	청년	소득 有	26,200,000	5,240,000	20,960,000	146,000	(+) 7,560,000	33,760,000	102,000
			(-) 18,920,000	7,280,000	201,000				
		소득 無	24,740,000	4,948,000	19,792,000	138,000	(+) 7,140,000	31,880,000	96,000
			(-) 17,860,000	6,880,000	190,000				

- 위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위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은 **7%/3.5%** 입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무상옵션 제공사항

주택형	무상옵션 제공사항			
	에어컨	인덕션	세탁기	냉장고
21A	○	○	○	○

■ 기타사항

-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상호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상호 전환은 갱신계약 시 가능합니다.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2. 29.)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 청년계층의 자격**을 갖춘 자
 (※ 청년계층 : ①-㉓와 ②~⑤를 만족하는 청년 또는 ①-㉓와 ②~⑤를 만족하는 사회초년생)

청년계층

- ①-㉓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4. 3. 1. ~ 2005. 2. 28.)
 ①-㉓ (사회초년생)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인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공급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4,024,661원 이하	120%
	2인	5,505,914원 이하	110%
	3인	6,718,198원 이하	100%
	4인	7,622,056원 이하	100%
	5인	8,040,492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	1인	4,024,661원 이하	120%

* 6인 이상의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29,9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해당 세대	비고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 순위

1순위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가 울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양산시, 경주시인 자
2순위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가 1순위 지역을 제외한 경상남도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유의사항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가입 증명서상 납부대상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로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합니다. 단, 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할인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①-④ 2)의 '퇴직'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 ①-④ 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청년 계층 해당 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 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 처리됩니다.
- 사회초년생 중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퇴직한 상태이므로 '거주지' 기준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격확인 및 판정기준 등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 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울산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 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 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총 자 산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금액에 서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 •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함. 	

5.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 2. 29.) 이후 발급분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자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4. 2. 2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는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며, 부적격 선정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공통 제출서류 (신청자 전원 필수 제출)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사 양식	신분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각 1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서약서 및 예비입주자 관련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 서명 	
기관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1통

기관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1통
	청약통장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일 기준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1통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p><아래 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를 해당 세대의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각1통

■ 개별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청년계층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가입내역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 기준으로 신청한 자 : 아래 '해당자' 제출 서류 확인 	국민연금공단 해당 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내역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 재취업준비생일 경우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실업인정일 기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술인일 경우 예술활동증명서 	해당학교 국민연금공단 해당 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고용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청년계층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가 우선공급 1·2순위 또는 일반공급 1·2·3순위에 해당하여 해당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본제출 어려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등으로 대체 위의 해당하는 자 중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의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와 실제 업무 근거지가 다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업무 근거지가 표시된 재직(퇴직)증명서 추가 제출 	해당직장 국세청 해당직장 (해당 세무서)

청년계층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경우 → 병적증명서(군 경력 기재하여 발급)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미가입자 → 입주 시 청약통장(본인 명의) 사본 제출 	병무청 해당은행
재청약자	재청약자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계층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무청 및 이전 임대사업자

■ 본인 또는 대리인 추가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붙임 공사 서식),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붙임 공사 서식)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6.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p>■ 입주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data-bbox="343 1608 1460 1697"> <thead> <tr> <th>입주자격</th> <th>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생, 청년 계층</td> <td>6년</td> </tr> </tbody> </table> <p>■ 재계약 시 계층의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청년 계층으로 입주한 후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어 계층 변경절차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청년 계층뿐만 아니라 새로 변경한 계층인 신혼부부 계층으로도 재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갱신계약 등	<p>■ 갱신계약 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 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 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계층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p>■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거주 중 청년계층의 소득이 변동되어 계약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갱신계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최초 갱신계약 시</th> <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10%초과 30% 이하</td> <td>120%</td> <td>130%</td> </tr> <tr> <td>30%초과</td> <td>130%</td> <td>1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갱신 계약 시 자동차·자산·주택소유 기준 초과 시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 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 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의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현재 타 임대주택에 계약자로 거주하고 있을 시 기존의 임대주택 명도 후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동 주택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7. 동호 추천 및 당첨자 발표

■ **동호추천**

- 주택의 동호는 공급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천합니다.
- 동호추천은 무작위 전산추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이나 저층/고층 배정 등의 사유로 동호를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 신청 유형별로 청약세대 수가 공급세대 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고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은 공사 준공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 발 표 일 : 2024. 6. 12.(수)(예정)**
- 당첨확인 : 울산도시공사 홈페이지(www.umca.co.kr)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의 인적사항(개명) 및 주소, 연락처 변경시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일정은 자격조회 처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8. 계약 안내

■ 계약기간 : 2024. 6. 19.(예정)

※ 계약기간은 자격조회 처리기간, 준공일(사용검사일)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계약장소 : 울산광역시청(※ 변경시 별도 안내 예정)

■ 계약시 구비서류

공통서류	대리인 방문 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계약금납부영수증 ② 계약자 도장(본인 방문 시 서명가능) ③ 계약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 ④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동의서(공사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p>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p>

- 만일 계약금을 납부했다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며 납부하신 계약금은 환불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동차·자산(금융자산 포함) 초과 및 주택소유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소명이 완료되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9.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계층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예비입주자 자격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행복주택 입주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단, 신청자격 중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 근거, 소득기준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 2. 29.)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p>계약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 및 예비입주자로의 선정 이후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즉시 우리공사(052-219-8453)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p>예비입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대상자별 예비입주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실 경우 종전 신청한 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p>예비입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에 입주하실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되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임차인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4년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피 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 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아울러 청약 시 기재하지 못한 태아, 자녀 수는 소득 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제외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 갱신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및 임차인이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아파트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울산광역시 또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임대료 납부는 고지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0. 단지 유의사항

- 행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복지, 보육, 문화, 체육, 가족지원 및 창업지원 등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지역편의시설(공간)을 설치하여 지자체 등 운영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작된 것으로 주택건설사업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상의 평면도와 달리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변경) 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호수에 따라 팸플릿 등의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설계, 동별설계, 세대내부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지구(또는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등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 및 기타 시설물 등이 일부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폐쇄되어 있으나 화재 시 개방됩니다.
- 방범용 CCTV는 지하 1층 기계실, 1층 주차장, 1층 출입구, 1층 주민공동시설, 각 층 중앙홀, 단지 내 복리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동통신 서비스용 중계기 시설은 이동통신사업자 소관사항으로 입주 시 설치되지 않아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입주 후 입주자와 이동통신사간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필로티, 관리사무소, 주민쉼터,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공유거실 등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는 차량출차 주의등과 주차장내 경보등에 인접한 일부 동은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 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부분 계단실 등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 보일러,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의 파손·고장 등을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저층세대의 경우 차로, 보행로 및 인근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에서 실내가 투시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등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도시가스(LNG)가 공급되며, 가스용도는 난방용입니다.
- 발코니에 상부세대 배수배관이 시공되어 배수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승강기, 용역원실, 자전거보관소, 지하저수조, 기계실, 방재실, MDF실, 쓰레기 수거시설 등이 있습니다.
- 단지 내 복리시설은 주민쉼터,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공유거실, 계절창고 등이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계획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기능·성능·상품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 (건축법,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수목의 수종·규격, 시설물, 포장 등), 저층부 외벽마감, 현관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인하여 입주 후 중량물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구조를 확인하여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라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에는 전문업체가 설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모든 공용시설은 입주자를 포함한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와 공동사용 합니다.
- 아파트 계약면적 외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혹한기 시설물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배관에 설치된 열선으로 인하여 겨울철 공용전기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거실 및 침실내부로 물넘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 본 주택건설사업 시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준공일(사용검사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이 단축·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제품 일체)은 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및 입주 전 설치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불가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는 울산광역시이며, 울산도시공사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성안동 청년희망주택의 운영·관리를 위·수탁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 안내사항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공급단지	사업주체	시공업체	구조	감리회사	감리금액	난방방식
성안동 청년희망주택	울산광역시	(주)신보종합건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주)대흥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561,000천원	개별난방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성능부문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등
고효율기자재	적용	- 보일러, 전동기, 급수펌프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 세대 각 실 :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 세대/공용부위 :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를 설치
실별온도 조절장치	적용	- 세대 각 실 : 실내온도조절기 설치
절수 설비	적용	- 세대 내 수전류 : 절수형 설비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및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21A형 3세대(각 층별 1세대)를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설치항목		제공대상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주거약자세대 (21A)
비상벨	비상시 관리실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	
싱크대	기존 식탁 겸용 싱크대에서 식탁을 제거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및 울산광역시 재정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2024. 2. 29.



울산광역시도시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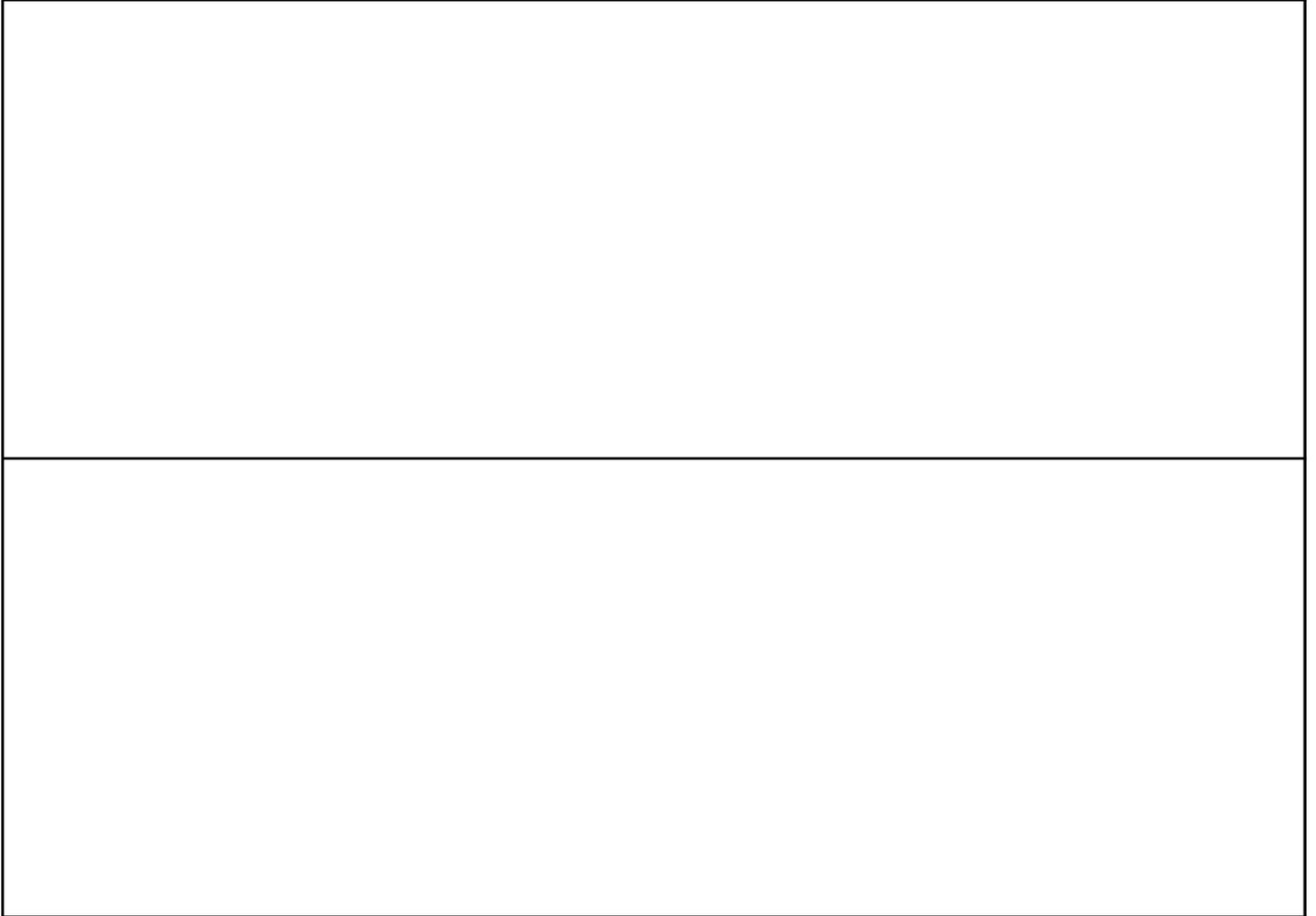
[별지 제1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총자산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별지 제2호] 조감도 및 세대별 평면도

■ 조 감 도



■ 평 면 도

19A	19B
19C	21A

* 상기 조감도와 평면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